

학교법인 분진학원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 및 중견 직업인 양성을 위한 고등전문인의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하 ‘법인’ 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 3 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강원관광대학
2. 서인천대학
3. 분진중학교

제 4 조 (주소)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39번지에 두며, 분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5-17 대우디오빌서초 1421호에 둔다.

제 5 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 산 과 회 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자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 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 (경비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 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1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 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대 학 평 의 원 회

제 13 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14 조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 명, 단 1명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2. 직원 2 명
3. 학생 1 명
4. 동문중 1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태백시장이 추천하는 1명, 태백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1명, 태백지역 관내 고등학교 교장 중 1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의수는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 조 (교내 평의원의 위촉)

- ①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는 경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 ②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각 구성단위 별 평의원은 각 단위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제 16 조 (평의원회 의장 등)

-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17 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8 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삭 제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9 조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2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3. 감사 1명을 상임감사로 할 수 있다.

제 21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22 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23 조 (개방이사의 자격) - 교육부 승인 제외 됨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교육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 한다.

제 24 조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 25 조 (개방이사의 선임)

-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 ④ 그 밖에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25 조의1 (개방이사추천위원회)

- 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강원관광대학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 ②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 하는 자 3인, 중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총 7 명으로 구성한다.
- ③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 한다.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6 조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제 27 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고,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제④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5조 의③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 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 28 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9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30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1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 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32 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제 33 조 (이사회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교육법시행령 제 56조의 규정에 제기된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4 조의 1 (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35 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 36 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7 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 38 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립 사업
2. 금전 투자 신탁
3. 부동산 임대업
4. 기타 수익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제 39 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 3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분진학원 사업소를 경영한다.

제 40 조 (수익사업의 주소) 제 39조의 사업소의 주소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70번지에 둔다.

제 41 조 (관리인) ① 제 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 42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 44 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 45 조 (임 면) 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전문대학의 신규임용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신규 임용되는 교수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교수 : 정년까지

- 2. 부교수 : 10년
- 3. 조교수 : 4년
- 4. 전임강사 : 2년 이내
- 5. 조교 : 1년

- ③ 제 1항 내지 제 2항의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 대학의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및 행정지원처장, 산학협력단장의 보직은 학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 ⑤ 제 1항 내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2 (전형결과 공개)

-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 45 조의 3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 교원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
- ③ 심사위원회 규정과 심사기준 및 방법등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 45 조의 4 (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전임교원 정원의 5% 이내로 한다. (학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 45 조의 5 (임용기간의 계산) 임용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 5조의 3을 준용한다.

제 45 조의 6 (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교원이 제 40 조 각 호의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 ②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46 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내지 제 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제 47 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 40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로 한다.
2. 제 40조 제 2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로 한다.
3. 제 40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 40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5. 제 40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 40조 제 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7. 제 40조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 48 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 40조 제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9 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 40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 ② 제 40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③ 제 40조 제 2호 내지 제 4호와 제 6호 내지 제 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50 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 1항 또는 제 2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서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⑤ 임면권자는 제 2항 제 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⑥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 2항 제 1호와 제 2호 또는 제 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 2항 제 2호 또는 제 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이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 51 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52 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와 폐쇄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3 조 (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 47조를 준용한다.

제 53 조의 1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53 조의 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제 1 절 교원인사위원회

제 54 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5 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장이 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승진교원에 대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 하여야 한다.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의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 56 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6인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55 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 58 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59 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 60 조 (인사위원회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장이 임명한다.

제 61 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62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3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4 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결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5 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65 조의 1 (위원의 기피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 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

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65 조의 2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 66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7 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 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8 조 (징계의결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68 조의 1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69 조 (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70 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관 사 무 직 원

제 1 절 직원인사위원회

제 71 조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 72 조 (직원인사위원회의 기능)

1. 직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3 조 (직원인사위원회 조직)

-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해당학교의 보직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4 조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 ①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행정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직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직원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 75 조 (직원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 ① 직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

다.

제 76 조 (회의록 작성)

-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 77 조 (인사위원회 간사 등)

-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78 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직 원 징 계 위 원 회

제 79 조 (직원징계위원회의 조직)

- ① 직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② 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학교의 보직자 및 직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1명으로 한다.

제 80 조 (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위원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 ② 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직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1 조 (징계의결의 기한) 직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2 조 (제척사유)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 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83 조 (위원의 기피등)

- ① 징계대상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 8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직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84 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직원의 임면권자가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사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85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① 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직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86 조 (징계의결)

-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② 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③ 임명권자가 제 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직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87 조 (징계의결시 정상참작 등)

직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87 조 1 (징계의 종류)

-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을 정지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감봉은 1월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 88 조(징계사유의 시효) 직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89 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 ① 직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직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89 조 1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89 조 2 (준용) 직원 징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국가공무원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 3 절 사 무 직 원

제 90 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기능직을 포함 한다. 이하 “일반직원” 이라 한다.) 으로 임용될 수 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 을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 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91 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 92 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93 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 94 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95 조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 74조를 준용한다.

제 96 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 제 97 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과)을 두며, 국(과)장은 참여(부참여) 또는 참사(부참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전 문 대 학

- 제 98 조 (학장 등) ① 전문대학마다 학장을 둔다.
②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 제 99 조 (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무처, 학생지원처 및 행정지원처를 두고, 교무과, 학생지원과, 총무과, 관리과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행정지원처장은 참사 또는 조교수이상으로 보하며, 각 과장은 주사이상으로 보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100 조 (지원시설등) ① 대학에 필요한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01 조(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교육과 연구 및 산학협력을 촉진·발전 시키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강원관광대학 산학협력단” (이하 「산학협력단」 이라한다)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절 중 학 교

제 102 조 (교장등) ① 중학교에 교장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3 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절 정 원

제 104 조 (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 105 조 (목적) 이 8장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6 조 (위원회 설치 범위) 병설학교는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 107 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 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5.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되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108 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 배수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9 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110 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 111 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 112 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 85 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될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제 113 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 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14 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115 조 (서류제출 유구) 운영위원회는 재직직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 116 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117 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을 정한다.

제 118 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제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 119 조 (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20 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1 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경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2 조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 123 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4 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 125 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조선일보에 공고한다.

제 126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127 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민 병 국	1908. 10. 18	4 년	경기 김포군 월곶면 조강리 158
이 사	송 병 석	1908. 6. 25	4 년	경기 김포군 월곶면 조정리 361
이 사	이 중 구	1924. 11. 16	4 년	경기 김포군 월곶면 고양리 149
이 사	성 낙 수	1916. 4. 6	2 년	경기 김포군 월곶면 고양리 104
이 사	유 재 정	1927. 3. 23	2 년	경기 김포군 월곶면 조강리 158
감 사	금 동 휘	1921. 3. 20	1 년	경기 김포군 월곶면 성동리 263
감 사	임 용 관	1922. 2. 18	2 년	경기 김포군 월곶면 조강리 287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자 제 45조 제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결격사유 해당자)
- ③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 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 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정원이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 44조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없이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 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1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 별표1 및 별표2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3년 11 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4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6년 11 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현 교장의 잔임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 년 2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 년 5 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교법인 분진학원 일반직 정원

총 계	8명		
사무직계	6명	기능직계	2명
4급(참사)	1명	8등급	1명
5급(부참사)	1명	10등급	1명
6급(주사)	1명		
7급(부주사)	1명		
8급(서기)	1명		
9급(부서기)	1명		

(별표 2)

강원관광대학 일반직 정원

총 계	37명		
사무직계	19명	기술직계	4명
4급(참사)	2명	6급	2명
		7급	1명
5급(부참사)	3명	8급	1명
		9급	
6급(주사)	3명	기능직계	14명
7급(부주사)	3명	7등급	1명
8급(서기)	4명	8등급	2명
9급(부서기)	4명	9등급	4명
		10등급	7명

(별표 3)

분진중학교 일반직 정원

총 계	4명		
사무직계	4명	기능직계	2명
6급(주사)	1명	10등급	1명
9급(부서기)	1명		

(별표 4)

서인천정보대학 일반직 정원

총 계	19명		
사무직계	8명	기술직계	3명
4급(참사)	1명	6급	1명
5급(부참사)	1명	8급	1명
		9급	1명
6급(주사)	1명	기능직계	8명
7급(부주사)	2명	7등급	1명
8급(서기)	2명	10등급	7명
9급(부서기)	1명		